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844
----------	-------

발의연월일 : 2025. 7. 30.

발 의 자 : 정춘생 · 강경숙 · 서왕진
김준형 · 백선희 · 황운하
신장식 · 김선민 · 박은정
차규근 · 이해민 · 한창민
정혜경 · 김재원 · 손 솔
윤종오 · 전종덕 의원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구시·도의원 선거의 경우 하나의 지역구에서 1인을, 지역구자치구·시·군 의원 선거의 경우 하나의 지역구에서 2인 이상 4인 이하를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역구시·도의원 선거 방식은 투표 절차가 단순하고 선거 관리 비용이 적게 소요된다는 장점이 있으나, 다수 정당 후보자의 당선에 유리하고 무효표 비율이 높아 정치적 대표성이 확보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지역구자치구·시·군 의원 선거의 2~4인 선거구제 역시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음.

지난 2022년 제8회 동시지방선거 지역구자치구·시·군 의원 선거에서는 30개 선거구를 대상으로 3~5인 선거구제를 시범 실시했음. 당

시 소수정당 당선자는 4명, 당선율은 3.7%로 전체 선거구 소수정당 후보의 당선율인 0.9%보다 4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이는 지역구 내 선출인원을 늘리는 것이 정치적 다양성을 확보하는데 있어 효과적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이에 지역구시·도의원선거는 소선거구제에서 하나의 지역구에서 3~5명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로 변경하고,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도 하나의 지역구에서 선출할 의원정수를 2~4명에서 3~5명으로 확대하고자 함(안 제26조제1항 및 제2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중 “고려하여 自治區·市·郡(하나의 自治區·市·郡이 2 이상의 國會議員地域區로 된 경우에는 國會議員地域區를 말하며, 行政區域의 변경으로 國會議員地域區와 行政區域이 合致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行政區域을 말한다)을 구역으로 하거나 분할하여 이를 劃定하되”를 “고려하여 확정하되”로, “1명으로”를 “3명 이상 5명 이하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인 이상 4인 이하로”를 “3명 이상 5명 이하로”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26條(地方議會議員選舉區의 劃定) ① 市·道議會議員地域選舉區(이하 “市·道議員地域區”라 한다)는 人口·行政區域·地勢·交通 그 밖의 조건을 <u>고려하여 自治區·市·郡(하나의 自治區·市·郡이 2 이상의 國會議員地域區로 된 경우에는 國會議員地域區를 말하며, 行政區域의 변경으로 國會議員地域區와 行政區域이 合致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行政區域을 말한다)을 구역으로 하거나 분할하여 이를 劃定하되, 하나의 市·道議員地域區에서 選出할 地域區市·道議員定數는 1명으로 하며, 그 市·道議員地域區의 명칭과 管轄區域은 別表 2와 같이 한다.</u> ②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u>획정하되, 하나의 자치구·시·</u>	第26條(地方議會議員選舉區의 劃定) ① ----- ----- ----- -----고 <u>려하여 획정하되</u>----- ----- ----- ----- ----- ----- ----- ----- ----- ----- ----- ----- ----- -----3명 이상 <u>5명 이하로</u>----- ----- ----- -----. ② ----- ----- ----- -----

군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	-----
구자치구·시·군의원정수는 <u>2</u>	----- <u>3</u>
<u>인 이상 4인 이하로</u> 하며, 그	<u>명 이상 5명 이하로</u> -----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의	-----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는 시	-----
·도조례로 정한다.	-----.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